

●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-208호

국고보조금 용도 외 사용 건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행정처분서 공시송달

다음 당사자는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(용도 외 사용금지)를 위반한 자로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2(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·징수)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입니다.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,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 합니다.

2022년 07월 11일

문화체육관광부장관

- 1. 공고 사유: 행정처분서 송달 불가능에 따른 공시송달
- 2. 법적 근거: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, 제33조의2
- 3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: 국고보조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의 일부를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용도 외로 사용하여 반환명령 하였음.

- 관련 근거: 대법원 2021. 3. 26. 선고 2021도1943 판결

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-1293, 1294(2022.05.09.)

4. 공고사항

당사자	주소	처분 내용
주식회사 에이앤에이 (대표자: 최*민)	강원도 춘천시 부평길8, 2층	22,497,240원 반환명령(납부기한: 2022.8.31.)
사단법인 매직포커스 (대표자: 정*국)	강원도 춘천시 부평길8, 2층	35,400,000원 반환명령(납부기한: 2022.8.31)

5. 이의신청: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

6. 반환금 납부 방법: 우리 부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

- 기관명(담당부서): 문화체육관광부(문화예술교육과)
- 주소: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, 문화예술교육과
- 문의처: 044-203-2767

<고지사항>

가. 본 처분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,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(서면 또는 온라인)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나.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, 온라인 행정심판(www.simpan.go.kr)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 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
다.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.